

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이스트스프링 차이나 증권투자신탁(H)[주식]

2.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:

- 환매수수료 삭제
-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집합투자재산의 매매·평가이익 분배유보)

3. 집합투자규약 변경시행일 : 2016년 10월 13일

4.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

변경전	변경후
제25-2조(수익증권의 전환)	
<p>①~④ <생략></p> <p>⑤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 하는 경우</p> <p>2.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.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①~④ <현행과 동일></p> <p><삭제></p>
제33조(이익분배)	
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u>다만,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p>②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<삭제></p> <p>②<현행과 동일></p> <p>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 <u>또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도 분배를 유보한다.(후단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결산·분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)</u></p> <p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<u>평가이익</u></p> <p>2.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<u>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u></p>
제41조(환매수수료)	
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	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

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

②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부과한다.

1. 클래스 A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10%, 30일이상 없음
2. 클래스 C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%, 90일이상 없음
3. 클래스 C2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%, 90일이상 없음
4. 클래스 C3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%, 90일이상 없음
5. 클래스 C4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%, 90일이상 없음
6. 클래스 C5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%, 90일이상 없음
7. 클래스 C-E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%, 90일이상 없음
8. 클래스 C-F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%, 90일이상 없음
9. 클래스 C-I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%, 90일이상 없음
10. 클래스 C-W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70%,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%, 90일이상 없음
11. 클래스 C-P(퇴직연금) 수익증권: 없음
12. 클래스 C-P2(연금저축) 수익증권: 없음
13. 클래스 S 수익증권: 30일미만 이익금의 10%, 30일이상 없음
14. 클래스 S-P 수익증권: 없음

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 (클래스 C-P2(연금저축) 및 클래스S-P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"연금저축계좌설계정약관")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

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별도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.

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	
<p>①~②<생략></p> <p>③수익자가 이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50조제1항에 의하여 게시된 날 또는 통보된 날을 포함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①~②<현행과 같음></p> <p>③수익자가 이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50조제1항에 의하여 게시된 날 또는 통보된 날을 포함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
<p>①<생략></p> 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~5<생략></p> <p>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	<p>①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~5<현행과 동일></p> <p><삭제></p>